제 85 호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**2014년 10월 27일**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백**	백** 1960-10-12	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64번길	무단전출
백**	백** 1990-09-27	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64번길	무단전출
황**	황** 1980-02-20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	무단전출
박**	박** 1958-02-04	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65번안길	무단전출
최**	최** 1975-04-26	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	무단전출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박 진형 문의전화 : 032-560-3365)

2014년 10월 27일

검단4동장 인